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62

발의연월일: 2025. 1. 13.

발 의 자:서범수・김소희・장동혁

이헌승 • 윤영석 • 김위상

김승수 • 박충권 • 서일준

이인선 • 고동진 • 박정하

성일종 · 김장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제1·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면전차의 경우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나 연습운전면허(운행 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동승자가 필요) 취득자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노면전차 운전자의취득대상 운전면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면전차의 선로는 다른 철도 차량의 선로와 달리 보행자가 노면전차의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빈 번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등)이나 「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둘 필요가 있음.

한편,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 문이 신설되면서 시·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이 병행 개정되 지 못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과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48조제1항제5호및 제82조제6항).

법률 제 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운전면허"를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8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 무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신호•지시에 따라 노 면전차의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6항 중 "제4항제1호·제2호"를 "제4항제2호·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①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②		
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려			
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			
면허 외에 「도로교통법」 제8			
0조에 따른 <u>운전면허</u> 를 받아야	운전면허(연습운전면		
한다.	<u> 허는 제외한다)</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위한 금지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5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			
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			
거나 통행하는 행위 <u><단서</u>	<u>다만,</u>		
<u>신설></u>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6. ~ 11. (생략)

② (생략)

제82조(과태료) ①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조 제1항제14호·제16호 및 제17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1호·제2호 및 제5항제1호·제2호만 해당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교통안전시	설이 3	포시하는	<u>: 신</u>
호ㆍ지시	또는	「도로	교통
법」 제5조	스에 따라	과 교통	-정리
를 하는 경	령찰공무	원 등	국토
교통부렁으	로 정히	나는 자기	가 하
<u>는 신호・</u>	지시에	따라 노	면전
차의 선로	를 통행	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 6. ~ 11.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6
<u>ম</u>
<u>4항제2호ㆍ제3호</u>
<u>.</u>